

지식재산권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! 특허청, 한국소비자원과 업무협약 체결

- 지식재산권 허위표시, 위조상품 유통 대응 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-

특허청(청장 김완기)과 한국소비자원(원장 윤수현)은 1. 15.(수) 11시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(서울시 송파구)에서 ‘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(MOU)’을 체결했다.

본 업무협약은 전자상거래 급증과 함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*와 위조상품의 확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* 등록 또는 출원된 것이 아닌 물건 등에 특허 등록 또는 출원 표시를 하거나,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로 행정지도 및 행정조사의 대상이 된다.

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거나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를 추천하면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해당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및 위조상품 유통, 부정경쟁행위*를 점검(모니터링)하여 단속 및 행정조사를 진행한다.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, 한국소비자원에서는 「소비자기본법」 제55조에 따른 피해구제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.

*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타목(아목 제외)

양 기관은 이외에도, 소비자의 지식재산권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과정을 공유하고 나아가 지식재산 보호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관한 합동 홍보활동(캠페인)도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.

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유발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‘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(2015년 설치)’와 지식재산권 침해제도 안내부터 신고접수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‘위조상품 원스톱 신고상담센터(2022년 설치)’를 운영하고 있다.

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은 “양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나 위조상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면서, “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김완기 특허청장은 “한국소비자원과의 업무협약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‘안전한 대한민국’을 만들기 위한 발돋움”이라면서, “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지식재산권으로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한편, 위조상품은 특허청의 ‘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(대표번호 1666-6464(유사유사), www.www.koipa.re.kr/ippolice)’를 통해, 지재권 허위표시는 ‘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(<https://www.ip-navi.or.kr/falsemark>, ☎1670-1279)’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.

※ 붙임: 특허청·한국소비자원 업무협약식 현수막,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,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

※ 사진은 행사 후 배포

담당 부서	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부정경쟁조사팀	책임자	과 장	신순호	(042-481-8438)
		담당자	서기관	박종필	(042-481-8229)
	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표시광고팀	책임자	팀 장	박준용	(043-880-5561)
		담당자	대 리	노영수	(043-880-5564)



<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- 표시방법 >

구분	표시방법	
특허	등록	특허 제10-0000000호 / 방법특허 제 10-0000000호
	출원	특허출원(심사중) 제10-0000-0000000호 방법특허출원(심사중) 제10-0000-0000000호
실용신안	등록	실용신안등록 제20-0000000호
	출원	실용신안등록출원(심사중)제20-0000-0000000호
디자인	등록	등록디자인 제 30-0000000호
	출원	디자인등록출원(심사중) 제30-0000-0000000호
상표	등록	상표등록 제40-0000000호
	출원	상표등록출원(심사중) 제40-0000-0000000호
인터넷 특허표시	물건, 용기 및 포장 등에 '특허/특허출원(심사중)/실용신안 등록/실용신안 출원(심사중)+인터넷사이트 주소' 표시 후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 지재권 번호 기재	

<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- 절차 >



□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

○ 운영목적

- 지식재산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문제를 신속·정확하게 해결하고 전문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권리자 권익보호

○ 지원내용

- (유선상담) 지식재산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제도, 수사·조사 절차, 신고방법 및 신고서·고소장 작성 방법 등 민원상담 및 안내
- (홈페이지 운영) 지식재산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제도 안내, 신고서·고소장 양식 제공 등 지식재산침해 관련 신고·접수
- (수사연계) 증거품(위조상품) 제출이 가능한 접수 건에 대해 수사 요건* 구비 여부에 따라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로 수사 연계

* 상표권자 감정결과 '위조상품'이고 판매자 특정(연락처, 계좌번호 등)이 가능한 경우

○ 이용방법

- (유선상담) 1666-6464
- (신고·접수) <https://koipa.re.kr/appolice>



신고상담센터
누리집 QR코드

< 신고상담센터 지원 절차 >

